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59828 중과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5369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7. 8. 한 2016년도 재산세(건축물) 26,126,140원의 부과처분 중 8,77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594,090원의 부과처분 중 1,125,53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 9. 6. 한 2016년도 재산세(토지) 24,243,180원의 부과처분 중 9,469,255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295,410원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부과처분 중 1,340,6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5면 마지막행의 "K"부터 6면 1행의 "보인다"까지를 "K은 2016. 5. 23.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대장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31일 이 사건 지하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